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0. 5.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5월 12일
-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0.5.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가. 제안이유

-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활용
- 정보화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조정 등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 수용

나. 주요골자

- 정보화책임관 용어 정의 및 설치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의
4호, 제9조의2)

-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5조제2항)
 - 매년 2월 말까지 ⇒ 매년 11월 말까지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 변경(안 제7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정보화협의회
 -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 ⇒ 도지사
 - 회원중 부시장·부군수 ⇒ 시장·군수
-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위탁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 위임조항 신설(안 제33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조정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보화 책임관”의 설치근거, 임명,
임무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안 제2조의4호, 제9조의2)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11월 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안 제5조 제2항)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회원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
군수로 강화하였으며(안 제7조)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과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신설(안제33조)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책임관을 핵심간부공무원으로 임명토록하고 있으나 이를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임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정보화책임관 임명대상을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와 관련된 정보화책임관 용어정의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공무원(안 제2조제4호)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2월말”을 “11월말”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 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도지사가 되며, 회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금융·민간단체 등의 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관할 지방 체신청장, 업무관련 실·국장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운영과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4호중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실·국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추진

③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제5호 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29조 본문을 제29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2조 중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현행과 같음) 4.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②—————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4조②————— ———지역정보화협의회—————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생략) ②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현행과 같음) ②————— ———11월말————— ———지역정보화협의회————— ③—————지역정보화협의회—————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 금융, 민간단체 등의 장, 부시장·부군수, 도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국장 및 관할 지방체신청장으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과 장이 된다.	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 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도지사가 되며, 회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금융·민간단체 등의 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관할 지방체신청장, 업무관련 실·국장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과 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p>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협의회운영과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협의회운영과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3.(생략)</p> <p>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u>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3.(현행과 같음)</p> <p>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u>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신설></p>	<p>제9조의2(정보화 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조정 할 수 있는 협심간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p>③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능)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p> <p>1.-4.(생략)</p> <p>5. <u>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사무</u></p>	<p>제11조(기능)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p> <p>1.-4.(현행과 같음)</p> <p>5. <u>지역정보화협의회의 사무</u></p>
<p>제2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①(생략) <신설></p>	<p>제2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①(현행과 같음) <u>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32조(수당 등)——<u>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u> ——<u>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u>——</p> <p>————— ————— <신설></p>	<p>제32조(수당 등)——<u>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u> ——<u>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u>——</p> <p>————— 제9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 계 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 ①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과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확정한다.

□ 대통령 훈령 제73호(1998. 9. 11)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수행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의 자격)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자질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실제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정통한 자
2. 정보화분야에 관한 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진 자
3.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제8조(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위인 기획관리 실장 기타 기획관련 부서의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다른 부서의 장이 더욱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는 국장급이상의 직위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된 직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보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할 직위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에 공무원을 보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 5. 25

제 안 자 : 유주열 의원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책임관을 핵심간부공무원으로 임명토록하고 있으나 이를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임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정보화책임관 임명대상을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안 제9조의2)

나. 안 제9조의2와 관련된 정보화책임관 용어정의 수정

- 핵심간부공무원 ⇒ 공무원(안 제2조제4호)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핵심간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2 제1항중 “핵심간부공무원”을 “실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4.“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u>핵심공무원</u>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3.(현행과 같음)</p> <p>4.“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u>공무원</u>을 말한다.</p>
<p>제9조2(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u>핵심간부공무원</u> 중에서 임명한다.</p>	<p>제9조2(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u>실국장급이상</u>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